

- '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'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모든 계약서는 「인지세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입니다.
- 오피스텔 공급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(※ 공급자와 계약자가 균등하게 납부하며, 공급자가 부담하는 인지세는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교부함.)
- 추후 안내 예정인 추가 선택품목(유상옵션) 계약 시 오피스텔 공급대금+추가 선택품목대금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인지세가 발생되며 이 경우에도 공급자와 계약자가 균등하게 납부하며 사업주체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전자수입인지는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하시기 바라며,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과세문서 및 세액 안내 [인지세법 제3조 제1항]

구분	기재금액	세액	
		수입인지 금액	계약자 부담금
부동산·선박·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	7.5만원

■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[전자수입인지 사이트(<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>) 접속]

[illegible]

■ 오프라인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

①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	▶	②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	▶	③ 결제 및 전자수입인지 발급
방문 전 해당지점 문의		용도 : 인지세 납부		※ 현금 납부만 가능